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모집

파주시에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2.

파주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 사업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사업내용

- 제공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추가 서비스 제공은 정부지원금 없음
- 내 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방식: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 제공가격: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유형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 및 2급 유형

<1급 유형>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 제공인력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3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 제공 인력의 4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퇴직 총당금 등은 운영비에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 제공기관 자체 규정 또는 관리·감독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

내용

사전·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 검사 통한 문제 및 욕구 파악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회당 50분
종결 상담	• 상담 종결 시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 시행 후 피드백 제공	-

2 신청 자격

○ 아래의 시설 및 인력 배치·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파주시 소재 기관

※ 근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25. 1. 21.)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 공간 16.5㎡ ※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1) 제공기관장 1명 2) 제공 인력 1명 이상	
		가. 인력 자격 기준 1) 서비스 제공기관장 (1) (면허) 정신과 의사 (2) (자격)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2) 서비스 제공 인력 (1)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 제공 인력은 제공기관장과 겸직 불가(1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불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고,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인력 자격 유형	1급 유형 * 아래 자격증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국가자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나. 청소년 상담사 1급 다.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나.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다.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아래 자격증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국가자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나. 청소년 상담사 2급 다. 전문상담교사 2급 라.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나.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공자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⑤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2. 2.(월) ~ (상시 신청 가능)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장소: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1층)
- 신청방법: 대표자 방문 접수 원칙
 -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필요)
 -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 서명 후 제출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붙임3] 서식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붙임2] 서식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 신분 확인용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의료인 면허증 또는 1급/2급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⑥ 지급계좌	통장사본	다른 바우처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구분	구비서류	비고
⑦ 시설기준	<p><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 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 공간 확인
⑧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⑨ 제공인력	제공 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 인력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⑩ 교육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

4 제공기관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서류 서면 및 현장 심사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항목: 제공기관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시설면적 및 기준 등 종합심사
- 심사 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 등

5 유의사항

-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 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p.88 참고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구분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교육방법
필수	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침 안내(1시간)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국민건강 보험공단	온라인
	②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12시간)		
	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1시간)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1시간)		
선택	① 단기상담에서의 사례 운영 및 개입방법 교육(2시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② 위기사례대응 프로토콜 구축 및 교육(2시간)		
	③ 202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 안내(1시간)		

※ (교육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사이버연수원) <https://www.mhws.or.kr/edu>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청장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및 지원신청서 빠짐없이 제출 및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증빙 자료 등 추가 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제외됨
- 신청하는 기관은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선정된 제공기관은 동 사업 관련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 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6 관련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건강증진과(☎031-940-5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공기관 준수사항

○ 제공기관 역할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처리
 -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바우처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 바우처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노력
 - 바우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홍보, 각종 자료·통계 작성 및 보고 등
 -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관련 정보의 입력 등)
 - 바우처 업무 관련 지도·감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 등
- 제공 인력 교육 및 노무관리
 -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시행, 제공 인력 노무관리 등

○ 정보공개 의무

-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포함),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이용 인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등

- 공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없이 수정

○ 제공 인력 정보 보고의무

- 제공 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을 등록

※ 제공자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입력

※ 최초 등록 후 계약·계약 해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해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제공 인력 정보 입력

○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빙 서류 제시 요청 가능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 사실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철저
 -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 그 외 사항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